

의안번호	2202863
의 퇴 인	정성국 의원
회 답 일	2024. 8. 23.
추 계 번호	24F28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평생교육단체,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025년 197.3억원, 2027년 205억원 등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603.5억원(연평균 20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3년간 -14억원(연평균 -4.7억원)
 -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3년간 -31.5억원(연평균 -10.5억원)
 -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3년간 -222억원(연평균 -74억원)
 -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3년간 -336억원(연평균 -112억원)
 -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최근 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4조 제1항)	-4.8	-4.7	-4.5	-14	-4.7
전공대학 명칭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4조 제2항)	-10.5	-10.5	-10.5	-31.5	-10.5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5조 제1항)	-74	-74	-74	-222	-74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5조 제2항)	-108	-112	-116	-336	-112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3조 제3항)	추	계	곤	란	
계	-197.3	-201.2	-205	-603.5	-201.2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 제3항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2	안 제44조 제1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3	안 제44조 제2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4	안 제45조 제1항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5	안 제45조 제2항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43조 제3항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X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 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안 제44조 제1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3	안 제44조 제2항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 한 감면	○	
4	안 제45조 제1항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	
5	안 제45조 제2항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안 제43조제3항)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 5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안 제44조제1항) 평생교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취득세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산세의 경우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와 감면액 추정액을 기초로 추계

- (취득세)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의 연 평균액(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재산세) 2020년 감면을 조정(100%→50%) 이후 감면건수가 감소추세이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 감소율과 연평균 건당 감면액을 적용하여 추계
 - 최근 3년간 감면건수 연평균 감소율: △19.0%
 - 최근 3년간 평균 건당 감면액: 1백만원

□ (안 제44조제2항)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2021년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2021, 2022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안 제45조제1항) 학술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와 감면액의 평균을 기초로 추계

- (취득세)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연평균 감면실적(63건) 및 연평균 건당 감면액(4,0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2018~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 감면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건당 감면액의 추이를 적용
- (재산세)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이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3년 평균 감면건수(1,218건) 및 건당 감면액 평균(4백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법 개정예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감면액이 감소하였으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의 평균에 감면액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예상 재산세 감면 수준을 추계

□ (안 제45조제2항) 장학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2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취

득세는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재산세는 최근 3년('20~'22년)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취득세)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37억원
 - 장학법인의 부동산 취득건수(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치나 그 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증감추세도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도 △72.1~243.5%로 불규칙함
- (재산세)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20~'22년)의 감면액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법 개정예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제45조제2항으로 일원화하여 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의 추세를 기준으로 추계
 - 최근 3년('20~'22년) 연평균 감면액 증가율: 5.3%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3조제3항)

(1) 제도개요

-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 부동산 취득일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2)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에 따라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최근 5년간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표 2]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감면액 (만원)	감면건수 (건)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2022	-	-	-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나.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4조제1항)

(1) 제도개요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
 - 2020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는 50% 감면, 재산세는 취득일 이후 5년간 50% 감면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5년간 평생교육시설 등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

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는 2018년 16건·4억원(건당 2,400만원)에서 2020년 감면을 조정 이후 2020년 12건·6억원(건당 4,900만원), 2022년 10건·2억원(건당 2,300만원)으로 감면건수와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함
- 재산세는 2018년 1,319건·21억원(건당 2백만원)에서 2020년 감면을 조정 이후 2020년 276건·2억원(건당 1백만원), 2022년 181건·2억원(건당 90만원)으로 감면건수 및 감면액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3]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18	4	16	24	21	1,319	2
2019	8	8	97	16	1,023	2
2020	6	12	49	2	276	1
2021	6	12	49	2	190	1
2022	2	10	23	2	181	0.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준(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취득세 감면실적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최근 5년간의 연 평균액(4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2019년까지 취득세는 100% 감면하며, 2020년 이후 50% 감면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4억원)·2019년(8억원) 감면실적은 50% 감면율을 가정한 감면실적으로 환산 (2018년 2억원, 2019년 4억원)하여 적용

[표 4] 취득세 감면실적: 2018~2022년

(단위 : 억원)

	2018 (조정감면실적)	2019 (조정감면실적)	2020	2021	2022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	2	4	6	6	2	4

주: 2018년, 2019년 조정감면실적 2억원·4억원은 2018년·2019년 감면실적×감면율 5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감면건수와 감면액 추정액을 기초로 추계
- (감면건수)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Delta 19.0\%$)이 향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
 - 2020년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받으므로 2025년~2027년 전망치에서 최근 5년간('18~'22년)간 평균취득건수(12건)를 차감

[표 5] 감면건수 현황 및 추정: 2020~2027년

(단위: 건,%)

	'20	'21	'22	연평균 감소율	'23	'24	'25	'26	'27
감면건수(전체)	276	190	181	19.0	147	119	96	78	63
	실적치				전망치				
20년 이후 취득분 5년간 감면에 따른 제외 분	.	.	.	.	.	.	12	12	1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건당 감면액) 재산세 건당 감면실적은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므로 최근 3년 평균액(1백만원)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
- 취득세 감면액 평균치, 재산세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6]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5~2027년

구 분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A, 억원)		4	4	4	12	4
재산세	감면액(B=a×b, 억원)	0.8	0.7	0.5	2	0.7
	감면건수(a, 건)	84	66	51	201	67
	건당 감면액(b, 백만원)	1	1	1	3	1
합 계(A+B, 억원)		4.8	4.7	4.5	14	4.7

(3) 추계결과

-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일몰기

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14억원(연평균 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4조 제1항)	-4.8	-4.7	-4.5	-14	-4.7
- 취득세	-4	-4	-4	-12	-4
- 재산세	-0.8	-0.7	-0.5	-2	-0.7

다.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4조제2항)

(1) 제도 개요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 2020년 12월말 신설되어 2021년 시행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므로 감면율은 85%가 적용됨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2년간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는 2021년 2건·6억원, 2022년 1건·5억원
 - 재산세는 2021년 117건·4억원(건당 4백만원), 2022년 131건·5억원(건당 4백만원)

[표 8]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21~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21	6	2	300	4	117	4
2022	5	1	500	5	131	4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수준(5.5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방법 :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2년간의 감면건수 및 감면액의 연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 제도 시행 후 2개 연도에 한해서만 감면실적이 집계되었으므로 연평균 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감면건수) 최근 2년 평균: 124건
 - (감면액) 최근 2년 평균: 4백만원
- 취득세 감면액 평균치, 재산세 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9]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5~2027년

구 분		2025	2026	2027
취득세 감면액(A, 억원)		5.5	5.5	5.5
재산세	감면액(B=a×b, 억원)	5	5	5
	감면건수(a, 건)	124	124	124
	건당 감면액(b, 백만원)	4	4	4
합 계(A+B, 억원)		10.5	10.5	10.5

(3) 추계결과

-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31.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전공대학 명칭 사용 평생 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4조 제2항)	-10.5	-10.5	-10.5	-31.5	-10.5
- 취득세	-5.5	-5.5	-5.5	-16.5	-5.5
- 재산세	-5	-5	-5	-15	-5

라.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5조제1항)

(1) 제도 개요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학술단체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단, 제45조의2(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등)에 따른 단체는 제외
- 당초에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감면대상 단체로 규정되었으나,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제45조제1항은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장학단체에 관한 사항은 동조 제2항으로 이관하여 규정
- 동 제도의 감면세목은 2010년 신설 당시부터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포함해왔으나,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됨

- 기존에는 동 법 감면조항에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15일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재산세 본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됨
[표 11] 2020.1.15. 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세목 변경 현황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감면대상 단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학술단체
감면세목	취득세	취득세
	재산세 본세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X
	지역자원시설세	X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5년간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2] 학술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18	32	100	32	103	3,746	3
2019	50	104	48	100	3,648	3
2020	19	56	34	47	1,228	4
2021	37	70	53	50	1,242	4
2022	21	64	33	47	1,183	4

주: 2018, 2019년 재산세 실적은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합산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와 감면액의 평균을 기초로 추계
 - 2018~2019년에 비해 2020년 이후 감면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건당 감면액의 추이를 적용하여 향후 감면 규모 추정
 - 2020년 이후 감면건수의 감소는 법 개정에서 감면대상이 학술단체로 축소·변경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감면건수)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연평균 감면실적(63건)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표 13] 취득세 감면건수 현황: 2020~2022년

(단위 : 건)

	2020	2021	2022	연평균
취득세 감면건수	56	70	64	6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건당 감면액) 최근 3년('20~'22년)간 건당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연평균 건당 감면액(4,000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표 14] 취득세 건당 감면액 현황: 2020~2022년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연평균
취득세 건당 감면액	34	53	33	40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와 감면액의 평균을 기초로 추계

- 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20년 이후 감면액이 감소함
- 재산세(본세)만 감면대상이 된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의 평균에 감면액 평균치를 적용하여 향후 예상 재산세 감면 수준을 추계
- (감면건수) 최근 3년('20~'22년)간 감면건수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므로 3년 평균 감면건수(1,218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표 15] 재산세 감면건수 현황: 2020~2022년

(단위 : 건)

	2020	2021	2022	연평균
재산세 감면건수	1,228	1,242	1,183	1,218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건당 감면액) 최근 3년('20~'22년)간 건당 감면액 평균(4백만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취득세·재산세 감면건수, 건당 감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표 16]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추정: 2025~2027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취득세	감면액($A=a \times b$, 억원)	25	25	25
	감면건수(a, 건)	63	63	63
	건당 감면액(b, 백만원)	40	40	40
재산세	감면액($B=c \times d$, 억원)	49	49	49
	감면건수(c, 건)	1,218	1,218	1,218
	건당 감면액(d, 백만원)	4	4	4
합 계($A+B$, 억원)		74	74	74

(3) 추계결과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222 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5조 제1항)	-74	-74	-74	-222	-74
- 취득세	-25	-25	-25	-75	-25
- 재산세	-49	-49	-49	-147	-49

마.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안 제45조제2항)

(1) 제도 개요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
-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8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80%를 각각 감면
- 동 제도의 감면세목은 2010년 신설 당시부터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두 포함해왔으나,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제외됨
 - 기존에는 동 법 감면조항에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1월 15일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재산세 본세만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됨

[표 18] 2020.1.15. 법 개정에 따른 감면세목 변경 현황

	2020년 이전	2020년 이후
감면세목	취득세	취득세
	재산세 본세	재산세 본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X
	지역자원시설세	X

(2)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

- (감면실적) 최근 5년간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19]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실적: 2018~2022년

연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감면액 (억원)	감면건수 (건)	건당 감면액 (백만원)
2018	43	42	102	52	2,857	2
2019	17	40	42	64	3,170	2
2020	23	49	46	55	2,678	2
2021	79	72	110	58	3,027	2
2022	22	48	45	61	3,246	2

주: 2018, 2019년 재산세 실적은 '본세'와 '도시지역분'이 합산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 (추계방법: 취득세) 취득세는 최근 5년('18~'22년)간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평균 감면실적: 37억원

- 장학법인의 부동산 취득건수(감면건수) 및 건당 감면액의 증감추이가 감면실적에 영향을 미치나 그 추세가 일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증감추세도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년 대비 증감률도 △72.1~243.5%로 불규칙함

□ (추계방법: 재산세) 재산세는 최근 3년('20~'22년)간의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법 개정예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이 제45조제2항으로 일원화하여 규정됨에 따라 2020년 이후의 추세를 기준으로 추계
- 최근 3년('20~'22년)간 감면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감면액 증가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최근 3년('20~'22년) 연평균 감면액 증가율: 5.3%

(3) 추계결과

□ 장학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는 향후 3년간 총 336억원(연평균 1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취득세·재산세 2025~2027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누적	연평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45조 제2항)	-108	-112	-116	-336	-112
- 취득세	-37	-37	-37	-111	-37
- 재산세	-71	-75	-79	-225	-75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